장학금지급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선발기준과 장학금지급은 본 대학교 제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업무의 주관) 본 대학교의 장학업무 중 예산안의 수립 및 장학생의 선정 은 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하고, 장학기금의 관리·운영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한다.

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

- 제4조(교내장학금)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.
 - 1. 신입생장학금
 - 가. 가천 장학금 : 전체수석 입학자
 - 나.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: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. 다만, 예체능계열 및 한의과대학은 제외
 - 다. 법과대학 입학성적우수장학금 : 법학과 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(수능반 영영역 비율 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
 - 라. 바이오나노대학 장학금
 - (1) 바이오나노·생명과학(정시,수시)장학금 : 바이오나노, 생명과학과 (정시,수시)입학자중 수능 평균성적(수능 반영영역 비율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
 - (2) 바이오나노학과 최초합격자 : 바이오나노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 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
 - 마. IT대학 장학금:
 - (1) 소프트웨어 설계 · 경영학과 입학성적우수(정시.수시) 장학금 : 소프트

웨어설계·경영학과(정시,수시) 입학자중 수능 평균성적(수능반영 영역 비율 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

- (2) 소프트웨어설계·경영학과 최초합격자 : 소프트웨어설계·경영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
- 바. 한의과대 특별장학금 (개정 2013.12.26.)
 - (1) 한의과대학입학자중 최초합격 순위가 2위 이내인 자
 - (2) 위 (1)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한의과대학입학자 중 최초합격 순위가 4위 이내인 자
- 사. 가천고시장학금 : 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영역 평균이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중 고시반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자
- 아. 수시 어학 특기자 장학금 : 수시 어학 특기자전형입학자 중 언어 영역 별 장학생으로 선발인원에 선정된 자
- 자. 글로벌경영학트랙 장학금 (신설 2013.02.27)
 - (1) 글로벌경영학트랙 입학성적우수(정시, 수시) 장학금 : 글로벌경영학트 랙(정시, 수시)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(수능반영영역 비율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자
 - (2) 글로벌경영학트랙 최초합격자 : 글로벌경영학트랙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
- 차. 경찰·안보학과 장학금 (신설 2013.02.27)
 - (1) 경찰·안보학과 입학성적우수(정시, 수시) 장학금 : 경찰·안보학과 (정시, 수시) 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(수능반영영역 비율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
 - (2) 경찰·안보학과 최초합격자 : 경찰·안보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 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
- 카. 금융수학과 장학금(신설 2015.02.13.)
 - (1) 금융수학과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: 금융수학과(정시, 수시) 입학자 중 수 능평균성적(수능반영영역비율적용)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
 - (2) 금융수학과 최초합격자 : 금융수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
- 타. 의과대학 장학금 : 의과대학(수시, 정시) 입학자(개정 2015.08.11.)
- 파. 학술교류 장학금 :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를 졸업한 자

- 하. 학·석사통합과정 입학장학금 : 학·석사통합과정 입학자(신설 2015.12.29.)
- 2. 성적우수장학금 : 해당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
- 3. 저소득층장학금 :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- 가. 인간사랑 :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
 - 나. 이웃사랑 :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
 - 다. 공동체사랑 : 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
 - 라. 지역사랑 : 기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
- 4. 보훈장학금 : 보훈대상자 및 보훈자녀, 다만, 보훈자녀는 입학 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5. 재직자녀장학금: 학교법인가천학원 산하 설치기관(학교및부속병원)에 재직중인 교직원(삭제) 자녀 또는 의료법인길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자녀. 단,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한다. (개정 2015.12.29.)
- 6. 공로장학금 : 학술·체육·사회봉사·문화예술·학생활동 등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
- 7. 간부장학금 : 학생회의 활동을 한 간부학생 중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
- 8. 근로장학금 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교내외에 근로를 제공한 자
- 9. 군장학금 :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후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- 10. 특기자장학금 : 특기자로서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
- 10의2. 음악콩쿨 및 미술대전 입상자 장학금 : 본교 주최 콩쿨 및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. 단, 입학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음악콩쿨은 3.0, 미술대전은 3.5이상이어야 한다.
- 10의3. 가천창작문학백일장 장학금 : 본교 주최 가천창작문학백일장에서 동상 (銅賞) 이상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. 단,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
- 10의4. 어학특기 및 과학·수학·전산정보특기 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특기자 기준에 적합한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을 면제

할 수 있다. 단.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

- 11. 외국인장학금 :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12. 고시장학금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에 해당 하는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종류와 장학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'장학금 지급에관한 세칙'에 따로 정한다.
 - 가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
 - 나. 위 가항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
 - 다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
 - 라. 6급 이하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
 - 마. 우수편입생 : 국가고시 1차 합격(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)자가 법 학과에 편입학할 경우
 - 바. 고시장려금 : 국가고시 1차 합격 후 2차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
- 13. 학술지원장학금 : 교원의 연구활동 및 면학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학술지 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2.09.25)
- 14. 전문계고특별 장학금 :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산업체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서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
- 15. 어학우수 장학금 : 글로벌리더 인재를 육성하고자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16. 가천나눔장학금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 2015.12.29.)
- 17. 창업장학금 : 창업지원단의 창업(교육)활동을 통해 축적한 창업마일리지에 따라 창업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 2017.08.29.)
- 18. 기타 장학금 : 위 각호에 장학금외에는 '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'으로 따로 정하되, 특별 장학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5조(장학금지급의 제한)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, 지급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5.08.11.)

- 1. 해당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- 2. 휴학한 경우와 복교 또는 재입학한 자로서 사유발생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(보훈자녀장학생 제외)
- 3.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 업성적이 평점평균 3.5미만인 경우
- 4.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(다만, 총장이 인정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한 장애학생 및 4학년 1학기<5년제의 경우 5학년1학기, 한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경우 본과 4학년1학기>는 9학점 이상 가능, 근로·특기자·외국인·보훈·고시장학생은 제외) (개정 2012.09.25., 2014.03.31)
- 5.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5 미만인 자(근로·특기자·외국인·보훈·고시 장학생은 제외) (개정 2014.03.31.)
- 6.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입학한 학과로부터 전과한 학생(수능성적우수 장학생 제외) (신설 2014.03.31.)
- 제6조(장학금의 반환)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 자는 해당학 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신입우수 장려금(월생활보조비)은 기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다.
- 제7조(장학금 지급 범위) ①장학금(교외 장학금 포함)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 - 1. 어학우수 장학금
 - 2. 해외교류 장학금
 - 3. 해외연수 장학금
 - 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
 - ②근로성격과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한다.(개정 2012.09.25., 2013.12.26)
 - ③이중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, 교외장학금, 국가장학금,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.(신설 2012.09.25.)
 - ④ 동종 또는 유사의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다. (신설 2013.12.26.)
- 제8조(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교외장학금) 교외장학금은 출연자 및 각 장학재단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

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.

제 3 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

- 제10조(장학금지급의 신청) ①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,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수혜 대상자를 선정, 소속대학장에게 추천한다.
 - ②대학장은 당해 대학의 장학생 대상자를 총괄하여 신청서와 관계증명서류를 지정된 기간안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장학생의 확정) 학생복지처장은 신청 장학생 대상자를 종합하여 장학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확정한다.
- 제12조(절차 및 상실) ①장학금신청대상자는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.
 - ②장학금 수혜확정자가 지정기간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제 4 장 장학위원회

- 제13조(구성) ①본 대학교에 장학급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겸임한다.
 - ③위원은 각 학장, 각 실·처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약간명으로 구성 한다.
- 제1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장학금의 예산책정 및 운영정책에 관한 심의
 - 2.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
 - 3.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
 - 4. 기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간사가 관리한다.
- 제18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장학·복지팀에서 담당한다.
- 제19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20조(장학사정관)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2.11.30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의 적용은 2013-1학기 장학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